

약관

#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 고객에게 드리는 감사의 인사말씀

먼저,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새롭게 태어난 신한라이프는

대한민국 생명보험업계를 선도하는 一流 리딩 컴퍼니를 지향합니다.

신한라이프는 '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고객님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신한라이프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회사의 미션을 실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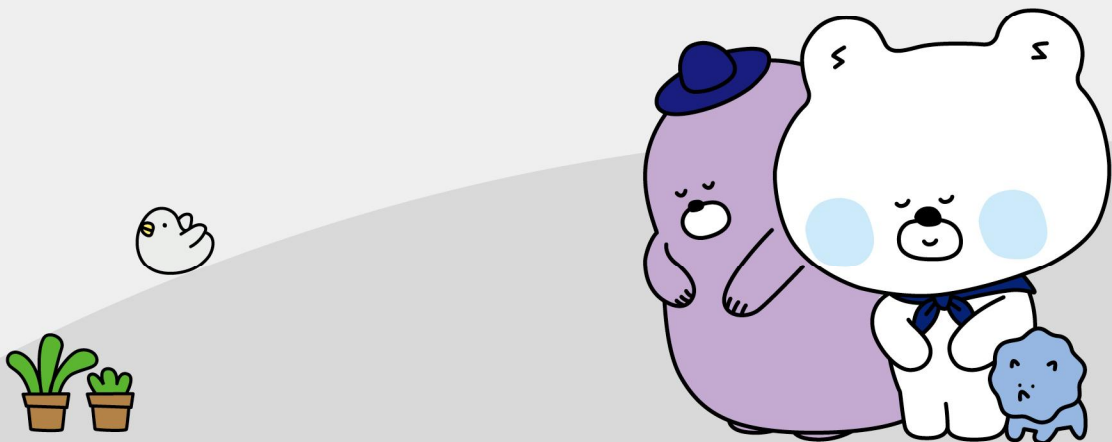
나눔과 상생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 중심 경영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한라이프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신한라이프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목적 범위(금융거래설정/유지여부판단, 고객동의사항 등)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서는 상품소개 목적 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거래체결 및 해당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 마케팅 또는 신한금융그룹사 등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제휴 또는 부가서비스, 신상품 안내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권리

고객님께서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법 제35조)

- 고객님께서서는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 (법 제36조)

- 고객님께서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통해 신한라이프와 고객님의 금융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및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신한라이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그 다른 정보에 대해 고지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철회 (법 제37조)

- 고객님께서서는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철회할 경우, 계약유지관리, 업무위탁 및 원활한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신규거래 고객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으며, 마케팅 동의 철회는 가능)
- 고객님께서서는 신한라이프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Do-Not-Call, 문자수신거부 등)
- 신한라이프는 동의철회 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고객님에게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 www.shinhanlife.co.kr 內 사이버창구  
(사이버창구 이용 시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www.donotcall.or.kr  
(금융권 공동구축 연락중지청구시스템)
- 내 방 : 본사 및 고객플라자 등 (홈페이지 지점안내 참고)

- 전 화 : 콜센터 1588-5580 / 080-550-5580

## 라.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법 제38조)

- 고객님께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한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에 대해 제공받으시거나 또는 열람하실 수 있으며, 신한라이프는 고객님의 청구사항 접수 시 서면이나 전자문서, 인터넷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열람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열람·제공을 요청하신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객님의 해당 정보에 대해 제공 및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 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한 후 7일 이내에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www.shinhanlife.co.kr](http://www.shinhanlife.co.kr) 內 사이버창구  
(사이버창구 이용 시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 내 방 : 본사 및 고객플라자 등 (홈페이지 지점안내 참고)
- 전 화 : 콜센터 1588-5580

##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법 제38조3)

- 고객님께서 신한라이프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보유기간 등이 경과한 경우(보유기간: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삭제요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삭제조치) 신한라이프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보험금 지급 등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제외되며, 해당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보관 및 강화된 접근통제를 통해 업무상 필수인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엄격히 통제합니다.

### 신청방법

- 내 방 : 본사 및 고객플라자 등(홈페이지 지점안내 참고)
- 전 화 : 콜센터 1588-5580

## 바. 본인정보 무료열람 요구 (법 제39조)

- 고객님께서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일정한 기간마다 고객님의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 받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NICE 평가정보(주) : 1588-2486 ([www.credit.co.kr](http://www.credit.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www.allcredit.co.kr](http://www.allcredit.co.kr))
- SCI 평가정보(주) : 1577-1006 ([www.siren24.com](http://www.siren24.com))

## 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 신한라이프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사항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한라이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02-3455-4797(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 신한L타워 / 담당부서 - 정보보호팀)

**나. 생명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02-2262-6600(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다.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국번없이 1332(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목 차

약관 가이드북	11
약관 요약서	15
주요보험용어 해설	25
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27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무배당)	3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0
제1조 목적	30
제2조 용어의 정의	30
제2조의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4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41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41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1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3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44
제7조 보험금의 청구	44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44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46
제10조 주소변경 통지	46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46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4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48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48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8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50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50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50
제17조 청약의 철회	52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54
제19조 계약의 무효	55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55
제21조 보험나이 등	58
제22조 계약의 소멸	59
<b>제5관 보험료의 납입</b>	<b>60</b>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60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60
제24조의2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61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63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64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65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65
<b>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b>	<b>66</b>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66
제29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66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67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67
제32조 해약환급금	68
제32조의2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68
제32조의3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69
제33조 보험계약대출	72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72
<b>제7관 분쟁의 조정 등</b>	<b>72</b>
제35조 분쟁의 조정	72
제36조 관할법원	73
제37조 소멸시효	73
제38조 약관의 해석	73
제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74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74
제41조 개인정보보호	74
제42조 준거법	75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75
<b>[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b>	<b>76</b>

[부표2]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78
[부표3] 재해분류표	79
[부표4] 장해분류표	79
다자녀가정우대특약	81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87
[별첨1] 약관 내용 중 법 관련 인용 조문	93
[별첨2] 표 1. 재해분류표	125
[별첨2] 표 3. 장해분류표	127



#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약관 가이드북



#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약관의 구성



## 약관 가이드북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약관 요약서

약관의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화 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약관

- 주계약 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 특약(특별약관) : 선택 가입한 보장 등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 용어해설 및 색인

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관련 법규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약관해설 영상

## 보험금 지급절차

## 전국지점






##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속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P41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43	
청약 철회	제17조(청약의 철회)	P52	
계약 취소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54	
계약 무효	제19조(계약의 무효)	P55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P48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48	
해약환급금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P66	
	제32조(해약환급금)	P68	
보험계약대출	제33조(보험계약대출)	P72	

## 5. 약관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 <b>약관 요약서</b> '에서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b>약관 요약서 P15</b>
2	' <b>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b> '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b>핵심 체크항목 P13</b>
3	' <b>약관 목차</b> '를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 <b>약관 목차 P7</b>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 <b>용어해설</b> '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b>용어 해설 P25</b>
5	스마트폰으로 ' <b>QR코드</b> '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b>QR코드 P12</b>
6	' <b>약관 본문 Box안 예시</b> ' 등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	약관조항 등이 <b>음영·컬러화</b> 되거나 <b>진하게</b> 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6. 기타문의 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 고객 콜센터(1588-5580)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약관 요약서



- ※ 약관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약관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이해한 후 계약체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약관 요약서는 **주계약과 부가 가능한 모든 특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보장은 가입하신 특약에 한해 이뤄집니다.

# 1.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보험상품명: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무배당)
- 보험상품의 종목 : 연금보험

## (1) 상품의 주요 특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매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종목에 따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부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금리연동연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기준금액 (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의 <부표1>보험금 지급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 신한ONE더라이프①연금보험 (②무배당)

- ① 연금보험: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예금자보호**

개별보험회사 보호금용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최저이율보장**

10년 이내 : 1.00%  
10년 초과 :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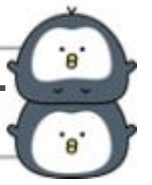
**연동형보증**  
[사망사고 발생시]

최저사망 지급금 보증

**연동형보증**  
[연금개시후]

금리연동 연금액 보증

##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1)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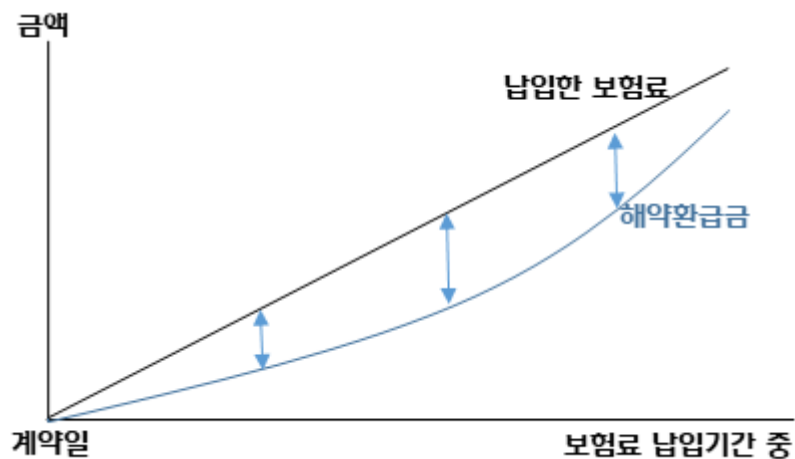
#### 재해·상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저축성 보험



- ①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 보험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2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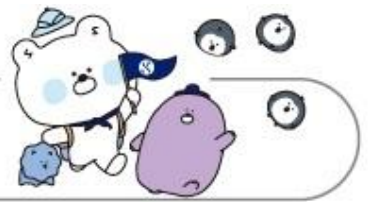


\*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제17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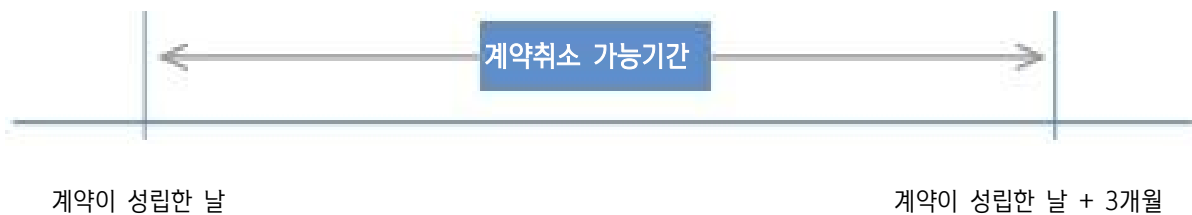
- 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제18조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의 청약시 **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③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3)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주계약 약관 제14조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 <b>해지</b> 가능 (회사)
보장 <b>제한</b> 가능 (회사)

#### [주의사항]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과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② 청약서의 질문사항과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선과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 (4)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 제19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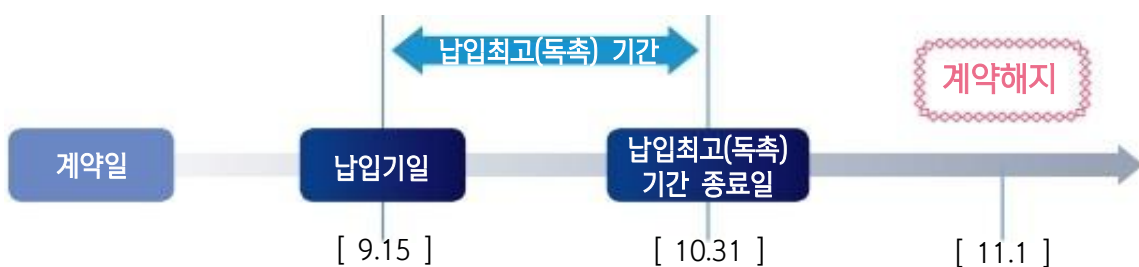
####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제26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 **납입연체**: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설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 제27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7) 보험계약대출

주계약 약관 제33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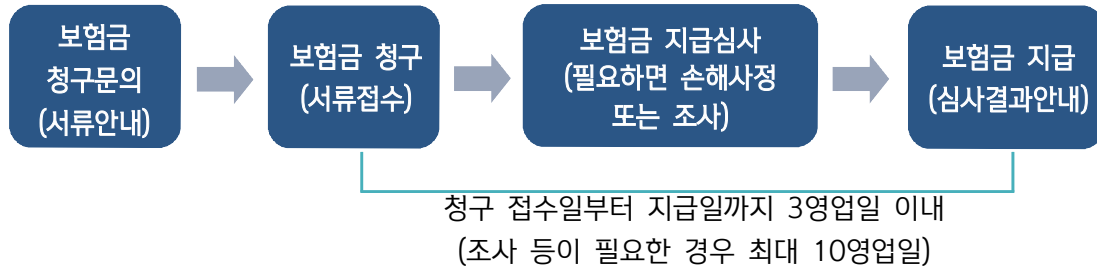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 (8) 보험금청구절차 및 서류

### 주계약 약관 제7조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입원	△	●				
수술	△		●			
실손	△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주요보험용어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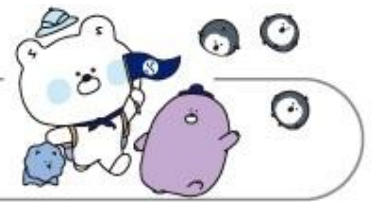


<b>보험약관</b>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b>보험증권</b>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함
<b>보험계약자</b>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함
<b>피보험자</b>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b>보험수익자</b>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함
<b>보험료</b>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함.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등)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으로 구성됨
<b>보험금</b>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b>보험기간</b>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함
<b>보장개시일</b>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함
<b>보험가입금액</b>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 등이 결정됨
<b>계약자적립액</b>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함
<b>해약환급금</b>	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가입부터 지금까지 쉽게 찾기!



# 가입부터 지금까지 쉽게 찾기!



## STEP 01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STEP 02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STEP 03 보험계약체결(회사 승낙)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 STEP 04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콜센터(1588-5580) 또는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 STEP 05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회사가 고객님의 청구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조항 번호는 주계약 약관 기준

# 신한ONE더라이프연금보험(무배당)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연금수익자 :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
- 마. 회사 :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 바.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사.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부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부표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보험금 지급사유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말합니다.

- 라.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별첨1> 참조)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마.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별첨 1> 참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바.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 3. 이자율과 지급금 관련 용어

#### [ 이자율 관련 ]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이자 계산법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text{단리계산법: } \frac{100\text{원}}{\text{원금}} + \frac{(100\text{원} \times 10\%)}{1\text{년차 이자}} + \frac{(100\text{원} \times 10\%)}{2\text{년차 이자}} = 120\text{원}$$

$$\text{복리계산법: } \frac{100\text{원}}{\text{원금}} + \frac{(100\text{원} \times 10\%)}{1\text{년차 이자}} + \frac{[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2\text{년차 이자}} = 121\text{원}$$

- 나.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 평균공시이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공시이율 : 제32조의2(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지급금 관련 ]

라. 계약자적립액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기본 계약자적립액과 추가 계약자적립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은 이전 계약자적립액에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 및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모두 완료되었거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을 더 이상 차감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0”으로 보며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sup>(※)</sup>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위험률 및 보증비용 등

마. 기본 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및 월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추가 계약자적립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추가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사. 월공제액 :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월공제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인 경우>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기본보험료 납입완료 후)

-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
  - +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 납입 후에 한함)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인 경우>
-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
  - + 계약관리비용(연금지급부분)

상기 월공제액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 중 유지관련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지급금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2)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

-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매월 공제되는 금액)
-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 +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
  -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

상기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납입 중 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은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아. 최저사망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제22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보장하는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금리연동연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금리연동연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자.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 :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1)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해당지급률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

$$\begin{aligned} & \text{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 \\ & = \text{기본지급률} \times (1 + \text{장기유지가산율}) \end{aligned}$$

- (2) 기본지급률 : 보험종목, 연금개시나이 및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00세연금형>

연금개시나이	남자	여자
50세이상 55세미만	3.02%	2.93%
55세이상 60세미만	3.27%	3.15%
60세이상 65세미만	3.60%	3.45%
65세이상 70세미만	4.05%	3.85%
70세이상 75세미만	4.55%	4.35%
75세이상	5.20%	5.00%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남자	여자
50세이상 55세미만	2.82%	2.73%
55세이상 60세미만	3.07%	2.95%
60세이상 65세미만	3.40%	3.25%
65세이상 70세미만	3.85%	3.65%
70세이상 75세미만	4.35%	4.15%
75세이상	5.00%	4.80%

(3) 장기유지가산율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장기유지가산율
25년이상 40년미만	30%
40년이상 55년미만	35%
55년이상	40%

차. 연금기준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지급금 및 금리연동연금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중도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기준금액”은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카. 최저연금기준금액 : 최저사망지급금 및 금리연동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연금기준금액 계산 예시

<예시> 100세연금형, 월 기본보험료 30만원, 납입기간 10년, 월납계약

2023년 1월 1일에 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만 납입한 경우 '2023년 2월 1일' 및 '2023년 3월 1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 2023년 2월 1일, 최저연금기준금액(2회차 기본보험료 납입 전)
  - = 기준기본보험료 300,000원
  - + 기준기본보험료 300,000원 × 7/100 × 31일(경과일수) ÷ 365일
  - = 301,784원
- (2) 2023년 3월 1일, 최저연금기준금액(3회차 기본보험료 납입 전)
  - = 기준기본보험료 600,000원 + 이미 발생한 이자 1,784원
  - + 기준기본보험료 600,000원 × 7/100 × 28일(경과일수) ÷ 365일
  - = 605,005원

※ 다만, 실제 단수처리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보험종목	경과기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100세연금형	20년 이내	7%
	20년 초과	5%
종신연금형	20년 이내	6%
	20년 초과	4%

- (3) (1)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제 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 및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반영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타. 보증비용

- (1)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사망지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2)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 :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파.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누계인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인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과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기본보험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이후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부터 “연금개시나이 - 5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1) 납입기간[다만, 제24조의2(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서 정한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로 하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100%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총액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12×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변경없이 적용합니다.

- (2) 다만,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1)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에 합산합니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 (3) (1)부터 (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별

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부터 (2)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

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주)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고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 월 기본보험료 30만원, 납입기간 10년, 월납계약

##### <예시1>

(1)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

$$= 30\text{만원} \times 12 \times 10\text{년} \times 100\% = 3,600\text{만원}$$

(2) 추가납입보험료 연간한도

$$= 30\text{만원} \times 12 \times 100\% = 360\text{만원}$$

(3) 계약체결 후 2년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 : 600만원

⇒ 계약체결 후 2년경과 시점의 추가납입보험료 연간 납입가능금액

$$= \{ (1) - (3), (2) \} \text{ 중 적은 금액} = \{ 3,000\text{만원}, 360\text{만원} \} \text{ 중 적은 금액} = 360\text{만원}$$

##### <예시2>

(1)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

$$= 30\text{만원} \times 12 \times 10\text{년} \times 100\% = 3,600\text{만원}$$

(2) 추가납입보험료 연간한도

$$= 30\text{만원} \times 12 \times 100\% = 360\text{만원}$$

(3) 계약체결 후 10년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 : 3,500만원

⇒ 계약체결 후 10년경과 시점의 추가납입보험료 연간 납입가능금액

$$= \{ (1) - (3), (2) \} \text{ 중 적은 금액} = \{ 100\text{만원}, 360\text{만원} \} \text{ 중 적은 금액} = 100\text{만원}$$

다. 위험보험료 :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라. 기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각 시점별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기본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또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 기본보험료”로 포함됩니다.

마.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각 시점별로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 전일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100세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이란 피보험자 99세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종신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별첨1〉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월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계약 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계약일: 2022년 5월 31일 일 때, 2022년 6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22년6월30일로 함

⇒ 2022년 6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라.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연도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마. 최소거치기간 :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의 필요한 최소기간을 말합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바. 연금개시일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개시나이의 연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제2조의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 ① 이 약관(특약포함)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질병 및 재해 분류코드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상의 분류코드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및 재해 발생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② 이 약관(특약포함)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및 재해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특약포함)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특약포함)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으로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 사례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됩니다.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부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재해장해급여금(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매년 보험금 지급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을 최저로 합니다.
- ② 제14항 및 제22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제22조(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④ 재해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⑥ 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⑦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더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⑪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별첨1> 참조)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된 이후에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금리연동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⑮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100세연금형에 한하여 100세 최종 연금 지급일에 계약자적립액이 금리연동연금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금리연동연금액이 아닌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생존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

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2>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0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 어떠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첨1>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반대 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기본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 보험금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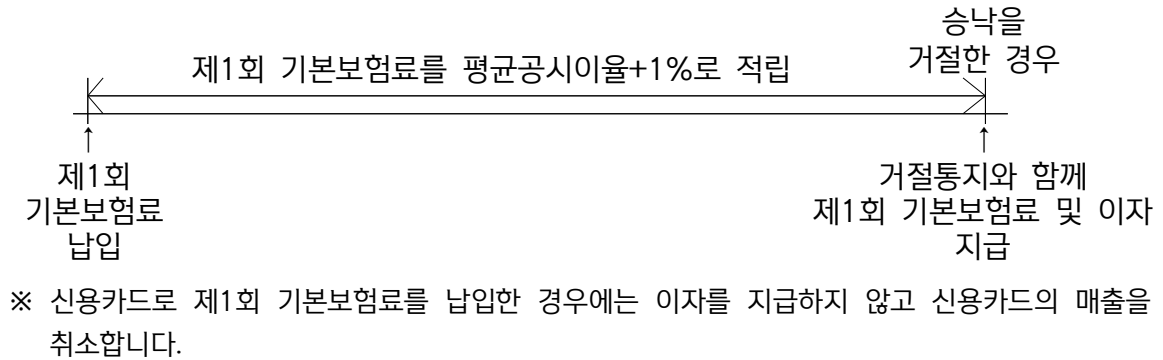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 제17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규정(<별첨1> 참조)한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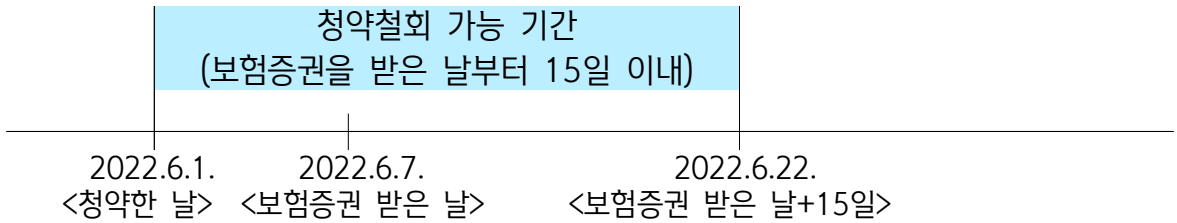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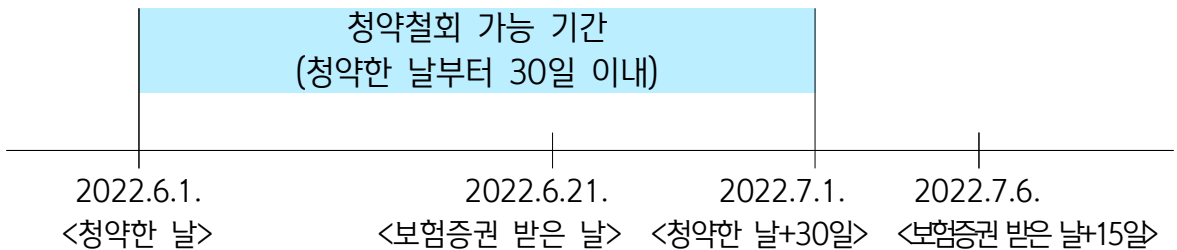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기간” 사례 예시

### [ 사례1 ]



### [ 사례2 ]



※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위의 [사례1]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2]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청약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합니다.

※ [사례2] 부분에서 “30일”은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첨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9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계약자
  4. 연금개시나이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리기 이전 : 변경 전 보험수익자
  - 2)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린 이후 : 변경 후 보험수익자
- ※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 또는 상법 제731조(<별첨1> 참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0년납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변경후의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 ⑤ 연금개시전에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연금액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 [ 감액 ]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액전	감액후
기본보험료	100만원	50만원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800만원	4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400만원 ( = 800만원 - 400만원 )	

- ⑥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보험료}}{\text{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보험료}}{\text{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및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⑦ 제5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직후 「기준 기본보험료」

$$= \text{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text{감액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감액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및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⑧ 제5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최저사망지급금 및 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저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직후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 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text{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text{감액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주) 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감액 직전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및 제32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7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⑨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⑩ 계약자는 제1항 제4호의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일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⑪ 제10항에 따라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기본지급률 및 장기유지가산율을 적용하여 금리연동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21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년월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나이로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7월 20일

예1) 2022년 1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22년 1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만 33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3세

예2) 2022년 5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22년 5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만 33년 9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과 최저사망지급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지급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

입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방법 및 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당월분을 제외하여 6개월분(다만, 5년납 미만은 당월분을 제외하여 11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부분은 추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며, 해약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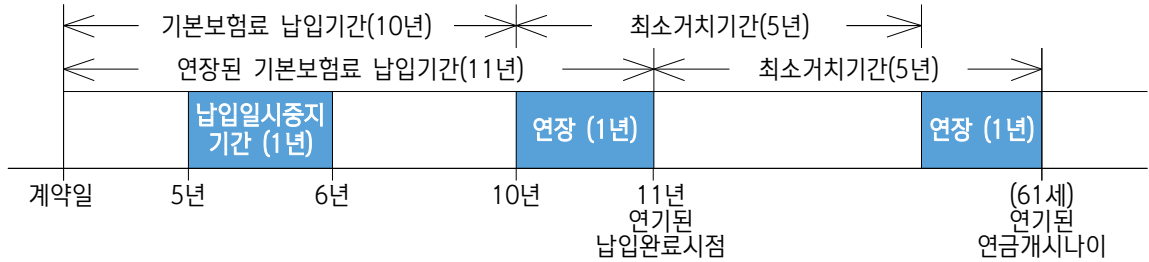
## 제24조의2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다만, 10년납 이상의 경우 5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
  - 2. 납입일시중지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200%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이하,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그 이후의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연기

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지난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 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다만,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례 예시

**신청당시 연금개시나이(60세), 신청당시 납입기간(10년), 최소거치기간 5년**



- ④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및 금리연동연금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이하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이라 합니다)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납입 중 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은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
- ⑤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1회 신청당 12개월을 최고한도로 하며, 총 납입일시중지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⑦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1.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의 정의
  2.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감소되며 계약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3.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 및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최고한도 내에서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으로 총당 가능한 최대 개월수
- ⑧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른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주는 서비스

###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기일(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 다음날부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첨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경우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부터 제4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기본보험료는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기본보험료를 의미하며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9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첨1>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 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례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

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파산선고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 제32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2조의2(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2>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⑤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32조의2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 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 ④ 이 계약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25%를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2%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2%)이 아닌 경과기간에 따른 최저보증이율로 적립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실”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금리연동이율”에서 공시합니다.

## 제32조의3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당 인출 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로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당 인출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를 말합니다.

##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금액
- 다만, 상기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산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및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⑤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인출 이후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예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 600만원, 기본보험료 : 10만원

i)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 : 400만원 ... ㉠

ii)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 최소유지금액 : 120만원 (연간 기본보험료)

최소유지금액을 유지하기 위한 인출가능금액 : 600만원 - 120만원 = 480만원 ... ㉡

iii) 1회당 인출가능금액 : 300만원 (해약환급금의 50%) ... ㉢

⇒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 가정시 : ㉠, ㉡ 및 ㉢ 중 작은 값 = 300만원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후 가정시 : ㉔ 및 ㉕ 중 작은 값 = 300만원  
 ※ 상기는 감액, 기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⑥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최저연금 기준금액에서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직후 「기준 기본보험료」  
 =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  $\frac{\text{인출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 인출 직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frac{\text{인출 직후 추가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추가 계약자적립액}}$
- (주)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및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⑦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최저연금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 「연금개시전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 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frac{\text{인출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 인출 직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frac{\text{인출 직후 추가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추가 계약자적립액}}$
- (주) 인출 직전 「연금개시전 최저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및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⑧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직후 「연금개시후 연금기준금액」

· 인출 직후 「연금기준금액」

$$= \text{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 직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주) 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제33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http://www.shinhan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금리연동이율”에서 공시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5조 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별첨1>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적용사례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제38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2조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에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첨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41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 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제42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부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 주)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 사망지급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최저사망지급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계약자적립액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계약자적립액」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25%를 적용합니다.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종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금리연동연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기준금액 (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

- 주)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 사망지급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을 최저로 합니다.
3. 「최저사망지급금」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계약자적립액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계약자적립액」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25%를 적용합니다.
5. 「금리연동연금 연지급액」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라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6. 「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지급금 및 금리연동연금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7. 「금리연동연금액 지급률」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하며, 해당 지급률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100세연금형의 경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에 계약자적립액이 금리연동연금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금리연동연금액이 아닌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9. 금리연동연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 드립니다.

## 부표2 |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금리연동연금액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의 다음날 이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32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금리연동연금액(제3조 제2호)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표3 |

## 재해분류표



별첨2 [표 1] 참조

부표4 |

## 장해분류표



별첨2 [표 3] 참조



## 다자녀가정우대특약



## 약 관 목 차

- 제1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형제자매”의 정의
- 제3조 “다자녀가정”의 정의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5조 보험요율의 적용
- 제6조 구비서류
- 제7조 특약의 성립
- 제8조 특약의 보장개시
- 제9조 특약의 적용범위
- 제10조 특약의 소멸
- 제11조 주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시의 처리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1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다자녀가정우대특약

##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2조 “형제자매”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형제자매”라 함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주계약 피보험자와 동일한 부모를 두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제3조 “다자녀가정”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제2조(“형제자매”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인 이상인 가정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다자녀가정”의 정의)에서 정의한 “다자녀가정”에 속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제5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제6조 구비서류

-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할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8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의 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할인 신청된 계약의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제9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날 이후 최초로 납입되는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부터 해당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주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 후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에서 25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중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
  2.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제2조(“형제자매”의 정의)에 따라 2인 이상의 ‘형제자매(본인포함)’를 두고 있을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항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제10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 제11조 주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시의 처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계약자가 제9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이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할인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이후에 납입되는 주계약 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 약관목차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3조 적용대상
- 제4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 제5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제3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 제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제7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8조 특약의 성립
- 제9조 특약의 소멸
-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관 기타사항

- 제11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제2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3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제4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청구인은 제5조(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제6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3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 제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대리청구인이 제6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8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제5관 기타사항

### 제11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첨1> 약관 내용 중 법 관련 인용 조문



아래의 법령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며, 법령 개정시에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법령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법령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목 차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4.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6. 상법관련 규정(타인의 생명의 보험)
  - 6-1.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6-2.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7. 전문보험계약자 관련 규정
  - 7-1. 보험업법 제2조(정의)
  - 7-2.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7-3.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8.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10.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1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18.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24.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25.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26.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1항
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3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36.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9.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40.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4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연 한도액)
45.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4.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6. 상법관련 규정(타인의 생명의 보험)

### 6-1.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6-2.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7. 전문보험계약자 관련 규정

### 7-1. 보험업법 제2조(정의)

#### 보험업법 제2조(정의) 19호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7-2.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

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7-3.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8.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0.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 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 ⑥ (생략)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8.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4.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5.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 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6.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금급여

-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 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듐,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1항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6.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9.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40.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삭제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4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연 한도액)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연 한도액)

-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45.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 ①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4.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있다.
    -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 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라.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마.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5. 제4호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⑥ 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⑦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 ~ 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 ~ 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 ~ 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 ~ 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 ~ 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 ~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 ~ 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코드이며,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및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해당 여부는 재해 발생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재해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의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의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4.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① 총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척추(등뼈)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기둥모양으로 이어지는 등뼈의 집합, 크게 전주·중간주·후주로 구분되며 때로는 목등뼈·가슴등뼈·허리등뼈 등 관련 부위와 연결된 더 작은 부위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 체간골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3. 장애의 판정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sup>주1)</sup>, 안전수지(Finger Counting)<sup>주2)</sup>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적출

신체로부터 조직을 끄집어내거나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가 병터나 장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인데 비해 그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로서 위암의 경우 위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 따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 광각

빛에 대한 감각. 즉 빛에 대한 수용 여부. 좁은 의미로는 명암에 대한 감각만을 일컬으나, 넓은 의미로는 색에 대한 감각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광각무란 광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 2. 귀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 순음

음색적인 특징 없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완전히 단일한 주파수의 소리

### 언어청력검사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최소값과 언어의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소리 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하여 기록하는 검사

### 임피던스 청력검사

음 자극을 주어 가운데귀의 음 에너지에 대한 저항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 이음향방사검사

내이(달팽이,와우)에서 발생한 진동파가 외이도에 전파되어 나타난 음향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

####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한다.

####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애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

하고 부드러운 고행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 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 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인레이

치아 병터에 생긴 보폭한 구멍에 금속, 도재 또는 복합수지 등으로 제작한 복구물을 접착제로 치아에 붙이거나 충전하는 방법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sup>2</sup>, 1/4 크기는 20cm<sup>2</sup>),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sup>2</sup>, 1/4 크기는 12cm<sup>2</sup>),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sup>2</sup>, 1/4 크기는 6cm<sup>2</sup>)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애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 방사통

추간판탈출증, 척추종양, 척추감염 등 척추신경에 생긴 병변으로 인해 대퇴부나 허리에서 허벅다리 뒤쪽 한가운데까지 좌골 신경의 영역을 따라 퍼지는 통증

## 7. 체간골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애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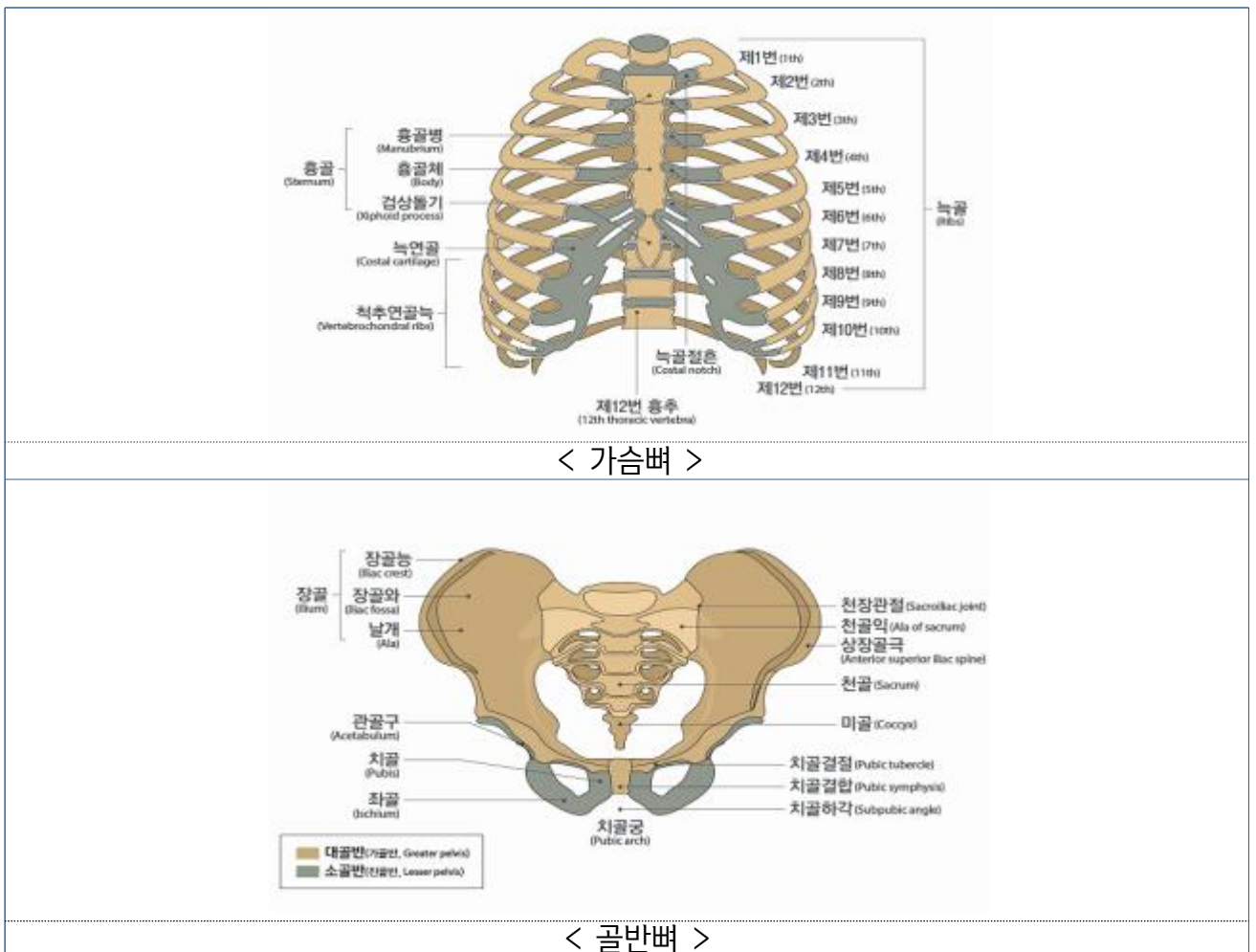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 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천장관절**

엉치뼈와 엉덩뼈의 귀모 양면 사이의 관절

**치골문합부**

엉덩뼈의 앞쪽에서 골반을 에워싸고 있는 뼈(치골)의 연결부위



## 8. 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별첨1>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가관절

뼈가 부러졌다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

#### 캐스트

석고붕대

## 9. 다리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별첨1>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고관절**

절구와 넓적다리뼈를 연결하는 관절, 골반의 볼기뼈고랑과 넓적다리뼈머리 사이에 끼어 있는 관절로 팔의 어깨관절에 해당하며 어깨관절과 같이 전형적인 구관절임(=대퇴관절, 골반관절, 엉덩이관절)

**경골(脛骨)**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 종아리뼈, 종지뼈와 함께 하퇴골을 이루며 정강뼈라고도 함.

**scanogram(스캐노그램)**

환부를 촬영한 X레이나 CT스캔으로 얻어진 이미지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별첨 1)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굴신운동(屈伸運動)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 11. 발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별첨1>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리스프랑(Lisfranc)관절

중족골과 족근골을 이어주는 작은 인대가 여러개 모여 있는 관절.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줌.



< 발가락 >

##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혈액투석

콩팥기능 대행장치(인공콩팥 등)를 이용한 콩팥기능 상실의 치료법

### 장루

창자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연결통로

### 요도루

요도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연결통로

### 요도협착

요도의 벽면에 흉터가 나 요도내강이 좁아진 상태. 요도내강이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대개는 후천적으로 발생함.

### 질구 협착

여성 성기인 질의 통로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것 또는 그런 상태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임상치매평가척도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sup>주)</sup>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SPECT(스펙트)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

#### 전환장애

내부의 심리적 갈등이 특정한 신체의 증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 내부의 갈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전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마비·경련·의식장애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임.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음식물 섭취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손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배변 배뇨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목욕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옷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